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도시형소공인연합회의 설립 근거 마련 등〉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49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3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 지정 및 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 설치	7
3. 도시형소공인연합회의 설립 근거 마련 등	15
※ 참고자료	
1.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제도	21
2. 소공인 지원센터 현황	24
3. 소상공인연합회 현황	2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10.
3. 회부연월일 : 2025. 11.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육성,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등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화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정책·기술 연구 기반 마련, 조직화와 안전망 강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집적지구 전담기관 및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 기반을 마련하며, 도시형소공인연합회를 설립하여 조직화와 공동사업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나. 도시형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 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 라. 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정책 및 기술혁신 등에 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 바. 도시형소공인연합회를 설립하여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9조의2, 제14조의 2 및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2(도시형소공인 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2. 도시형소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3.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제14조의2(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2. 해외 판로·플랫폼 구축 지원 3.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번역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도시형소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¹⁾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작업장의 디지털화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²⁾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생 략)

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

제14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장관은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³⁾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개정안의 취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형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이 산

-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국내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
 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룸,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제품·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기술혁신·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
 6.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0.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하 생략)

업·기술 환경의 변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재해로 인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형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개정안이 도시형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과 유사한 취지의 입법례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⁵⁾,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⁶⁾ 등이 있음.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생략)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제15조의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2.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3.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4. 그 밖에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산업·안전 등에 관한 규격의 획득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2. 해외규격의 확보·보급
 3.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 (이하 생략)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수요가 높아 제조혁신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하고, 도시형소공인에 특화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재해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현장에 대한 안전망을 우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 지정 및 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 설치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5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2(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집적지구 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2. 지역 내 공동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신 설>	3. <u>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u> 4. <u>집적지구 운영성과의 평가 및 관리</u> 5. <u>그 밖에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u> ③ <u>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8조의2(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의 설치·운영) ①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관련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및 기술혁신 지원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② <u>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u>도시형소공인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평가</u> 2. <u>기술혁신, 표준개발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u> 3. <u>도시형소공인과 관련된 국내외 시장·산업 동향 조사 및 분석</u> 4. <u>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수집·분석</u> 5. <u>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u> ③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④ <u>연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우선, 현행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소기업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⁷⁾

7)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5년 현재,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전국에 총 56곳이 지정되어 있는데(참고자료 1), 집적지구에 대한 관리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집적지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파악됨.

< 지역별 소공인 집적지 및 집적지구 현황(2025년)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집적지	2,487	235	106	99	107	30	30	29	1
(비중)	(100%)	(9.4%)	(4.3%)	(4.0%)	(4.3%)	(1.2%)	(1.2%)	(1.2%)	(0.0%)
집적지구	56	15	2	3	2	2	2	-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집적지	875	40	119	126	64	119	231	265	11
(비중)	(35.2%)	(1.6%)	(4.8%)	(5.1%)	(2.6%)	(4.8%)	(9.3%)	(10.7%)	(0.4%)
집적지구	14	4	1	3	3	1	2	2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관리
6.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집적지구 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집적지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짐으로써 집적지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역창업전담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⁸⁾ 등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⁹⁾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에 기반한 신산업·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운영
2.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 금융, 고용 및 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
5.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역의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업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업무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6조(지정 등의 취소) ① ~ ④ (생략)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역창업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의 효율화 및 지역 특화 전략 강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 관련 정책 수립, 제도개선 및 기술혁신 지원에 필요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동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¹⁰⁾ 동 센터의 도시형소

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2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이하 생략)

제57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이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의 지정
2.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4.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5.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6.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제58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진흥원 및 지역창업전담기관 등 창업지원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창업지원기관의 범위와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보고와 검사) ① ~ ② (생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창업전담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

공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능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현재 소상공인 관련 연구·조사 기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연합회¹¹⁾가 일부 수행하고 있는바,

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상담 및 조사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에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조사·평가 및 홍보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이하 생략)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이하 생략)

개정안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도시형소공인에 특화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분석하고 통계자료 등 정책정보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현행법에 따라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¹²⁾을 지원하고 있으므로(참고자료 2), 개정안과 같이 ‘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를 새로이 설치하는 방안 또는 기존에 운영 중인 소공인 지원센터를 연구기능이 추가된 ‘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로 위탁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 연구센터의 목적·기능 및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연구기관 등을 새로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 「소상공인기본법」¹³⁾,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¹⁴⁾, 「소금산업 진흥법」¹⁵⁾ 등이 있고, 기존의 관련 기관·단체

12)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법인이 운영(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비 지원)하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하여 건립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혹은 위탁 운영하는 방식임.

13) 「소상공인기본법」

제32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① 정부는 소상공인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① 국내외 산업입지 현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기업의 산업입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조사·연구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공단에 산업입지연구센터를 둔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15) 「소금산업 진흥법」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①·② (생략)

를 연구기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중소기업기본법」 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9),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0) 등이 있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과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6)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1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4조의2(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1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연구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① 정부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연구소를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이하 “양자연구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5. 그 밖에 양자연구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 ⑤ (생략)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시형소공인 특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 연구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도시형소공인연합회의 설립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동 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연합회에 대한 중소기업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권한과 이와 관련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안 제22조의 2부터 제22조의6까지, 제25조 및 제26조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제5장 도시형소공인연합회</u> <u>제22조의2(도시형소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도시형소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u> <u>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도시형소공인일 것</u> <u>2. 대표자가 도시형소공인일 것</u> <u>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u> <u>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 <u>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u> <u>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도시형소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2조의3(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시형소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 사업 2. 도시형소공인의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도시형소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6.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7.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4(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5(지도·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6(행정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6장 보칙
<신 설>	제7장 벌칙
<신 설>	제25조(벌칙) 연합회가 제22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임직원 또는 청산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도시형소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안의 취지는 도시형소공인을 대표하는 ‘도시형소공인연합회’의 설립·운영, 사업 수행 및 동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바, 각 조문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조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1)과 유사함.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지도·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27조(행정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9조(벌칙) ① (생략)

②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

개정안에 따라 ‘도시형소공인연합회’의 설립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동 연합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도시형소공인의 조직화를 촉진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정책 수립 시 관련 업계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청취하여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도시형소공인이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개념인 만큼²²⁾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설립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참고자료 3), ‘도시형소공인연합회’의 설립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정 단체의 대표성 혹은 포괄성, 기존 단체와의 차별성 및 국고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시형소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입장임. 다만, 소상공인 전체를 대표하는 기존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및 소공인 관련 민간단체²³⁾와의 역할·기능 중복, 대표성의 혼

· 정수한다.

2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생략)

23)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소공인 관련 기존 민간단체로 ‘(사)전국도시형소공인협회’와 ‘(사)한국소공인협회’가 있음.

선 및 협회·단체 간 갈등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단체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 후 입법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

□ 사업 개요

- (지정대상) 동일업종의 소공인수가 동일 행정구역별 기준을 상회하고, 지자체가 집적지구 지정을 신청 지역

<행정구역별 기준>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의 읍·면·동	50인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면·동	40인이상(업체 수)
군의 읍·면	20인이상(업체 수)

- (지정현황)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중기부가 56곳 지정('25.12월 기준)
- (지정절차) 지자체(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후, 중기부 지정
 - * (신청) 자자체에서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계획 등 수립 후 신청 → (심의·의결) 중기부 현장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지정·고시) 중기부 지정 및 고시 → (지원) 인프라 시설 구축비 등 지원

□ 지원 내용

-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에 따라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신청자격 부여 및 선정 시 구축비 25억원 이내 지원(국비 : 지방비 = 1 : 1)
- 집적지구내 개별 소공인에 대해서는 판로개척, 스마트제조지원, 클린환경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우대 지원

<집적지구내 개별 소공인 우대사업>

사업명	사업 내용	우대 사항
판로개척지원	유망 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가점(2점)
클린환경조성	에너지 효율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	가점(2점)
스마트제조지원	소공인의 공정 디지털화·스마트화 등을 위해 장비·소프트웨어 등 지원	가점(2점)

<소공인 집적지구 현황(총 56곳)>

지정연도	연번	집적지구	집적지구명
'16 (3개)	1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기계·금속(C24, C25, C29) 집적지구
	2	서울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기타 제품 제조업(C33) 집적지구
	3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집적지구
'17 (8개)	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집적지구
	5	경기 시흥시 대야·신천동	경기도 시흥시 대야·신천동 기계·금속(C29, C25) 집적지구
	6	경기 양주시 남면	경기도 양주시 남면 섬유제품(C13)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7	경기 용인시 영덕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집적지구
	8	부산 동구 범일동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의류(C14) 집적지구
	9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식료품(C10)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10	강원 강릉시 사천면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식료품(C10) 집적지구
'18 (5개)	11	강원 인제군 북면	강원도 인제군 북면 식료품(C10)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12	서울 금천구 독산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의류(C14) 집적지구
	13	서울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의류(C14) 집적지구
	14	경기 군포시 군포1동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금속가공(C25) 집적지구
	15	경기 포천시 가산면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구(C32) 집적지구
'19 (9개)	16	대구 중구 대봉1동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1동 의류(C14) 집적지구
	17	광주 동구 서남동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집적지구
	18	경남 김해시 진례면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비금속 광물제품(C23) 집적지구
	19	전북 순창군 순창읍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식료품(C10) 집적지구
	20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식료품(C10) 집적지구
	21	경기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기타 기계 및 장비(C29) 집적지구
	22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집적지구
	23	대구 중구 성내동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동 기타 제품(C33) 집적지구
	24	충남 공주시 유구읍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섬유제품 제조(C13) 집적지구
'20 (10개)	25	서울 중랑구 면목·상봉동	서울시 중랑구 면목·상봉동 패션·봉제 (C14, C13, C15) 집적지구
	26	대전 대덕구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금속 가공제품(C25), 기타기계 및 장비(C29) 집적지구
	27	인천 동구 송현동, 송림동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송림동 금속 가공제품(C25), 전기 장비(C28), 기타기계 및 장비(C29) 집적지구
	28	전북 전주시 팔복동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동 금속 가공제품(C25) 집적지구

지정연도	연번	집적지구	집적지구명
	29	경기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비금속광물(C23)집적지구
	30	경기 광주시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가구(C32) 집적지구
	31	광주 동구 충장로 4가, 5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5가 기타제품(C33)집적지구
	32	부산 금정구 서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C14) 집적지구
	33	서울 마포구 서교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집적지구
	34	경북 영주시 풍기읍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식료품(C10) 집적지구
	35	경기 화성시 봉담읍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금속가공제품(C25) 집적지구
'21 (10개)	36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양말제조 소공인 집적지구
	37	서울 관악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조원·미성동 의류봉제 집적지구
	38	대구 북구 노원동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 안경·안경렌즈제조업(C27) 집적지구
	39	서울 양천구 신월동	양천구 신월동 가방제조업 집적지구
	40	인천 서구 오류왕길동	인천 서구 오류·왕길 표면처리 집적지구
	41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고양 인쇄문화 허브센터
	42	충남 홍성군 광천읍	K-GIM(광천김) 식료품제조업 집적지구
	43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 야생차소공인 집적지구
	44	경기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김포시 소공인 집적지구
	45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읍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22 (3개)	46	경기 화성시 동탄5동	경기도 화성시 동탄5동 화성 K-반도체 베이스(C26, C29) 집적지구
	47	서울 광진구 중곡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봉제(C13, C14) 집적지구
	48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신동 봉제(C14) 집적지구
'23 (3개)	49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창신제1동, 창신제2동, 송인제1동, 송인제2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창신제1동, 창신제2동, 송인제1동, 송인제2동 의류봉제(C14) 집적지구
	50	전북 부안군 진서면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젓갈제조업(C10) 집적지구
	51	강원 원주시 우산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동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집적지구
'24 (5개)	52	대전 동구 정동·중동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중동 인쇄특화(C18) 소공인 집적지구
	53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섬유·봉제(C13·C14) 집적지구
	54	전남 무안군 청계면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생활도자 (C23) 집적지구
	55	경북 경산시 진량읍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제조가공(C25-C29)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56	서울 강북구 미아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패션·봉제(C14) 집적지구

1. 특화지원센터

□ (사업목적) 소공인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공인 대상 교육·상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소공인의 성장·발전 촉진

□ (지원대상) 소공인 관련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지자체 산하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

□ (자격요건)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 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의 읍·면·동	50인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면·동	40인이상(업체 수)
군의 읍·면	20인이상(업체 수)

□ (지원규모) '25년 41곳 내외(신규 3곳 선정 포함) → '26년 40곳 내외

□ (지원방식) 센터 운영 및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3억원 내외)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기본		■ 소공인 및 관련정책 정보제공 및 실태파악(규모·특성·협업도 등) ■ 제조인력 정보 제공, 소공인 지원기관(산학연)과의 서비스 연계 ■ 공용시설(전시장, 상담실 등)과 공용장비(3D 프린터 등)의 관리·운영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지원 및 기타 정부지원 사업 연계 ■ 센터 단계별 역할 로드맵(집적지 발전방안) 작성 및 운영	-
특 화	교육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필수
	자율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3개 이상

□ 특화지원센터 현황(41곳 운영중, '25년 12월 기준)

연도별	구분	지역	센터명(주관기관명)
2013(2곳)	1	서울	서울 창신 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한국패션협회)
	2	부산	부산 범일 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부산테크노파크)
2014(1곳)	3	대구	대구 성내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2015(11곳)	4	서울	서울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사)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5	서울	서울 봉익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6	경기	시흥 대야 기타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재)시흥산업진흥원)
	7	경기	화성 향남 기타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화성상공회의소)
	8	경기	성남 상대원 식품 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성남산업진흥원)
	9	대전	대전 정동 인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0	충남	충남 금산 인삼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11	부산	부산 범천 귀금속 소공인특화지원센터(부산경제진흥원)
	12	부산	부산 범천 가죽가방신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13	광주	광주 서남 인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재)광주디자인진흥원)
	14	전북	전주 팔복 금속가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2016(6곳)	15	경기	고양 장항 인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재)경기테크노파크)
	16	경기	부천 신흥 전기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부천대학교산학협력단)
	17	경기	용인 영덕 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재)용인시산업진흥원)
	18	대전	대전 오정 기타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9	충북	청주 중앙 인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	전북	전북 순창 장류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재)전북경제통상진흥원)
2018(3곳)	21	경기	군포 당정 금속가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군포산업진흥원)
	22	경남	김해 진례 도자 소공인특화지원센터(김해도예협회)
	23	대구	대구 대봉 의류봉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사)디자인정책연구원)
2020(5곳)	24	대구	대구 노원 안경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25	경기	포천 가산 가구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26	경기	안양 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안양산업진흥원)
	27	전남	무안 도자 소공인특화지원센터(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28	서울	서울 광진 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사)서울광진의류협회)
2021(4곳)	29	경기	동탄 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사)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
	30	인천	인천 송림 기타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인천신용보증재단)
	31	경기	경기 시흥 정왕 전기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재)시흥산업진흥원)
	32	경남	경남 상생 소공인특화지원센터(한국생산성본부)
2023(2곳)	33	공주	공주 섬유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재)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
	34	전주	전북 상생 소공인특화지원센터((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2024(4곳)	35	강원	영월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재)영월산업진흥원)
	36	부산	부산 서동 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부산경남패션봉제산업협동조합)
	37	광주	광주 충장 귀금속 소공인특화지원센터(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38	대전	대덕 덕암 금속가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대덕경제재단)
2025(3곳)	39	경기	파주 출판인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사)한국소공인협회 경기북부지부)
	40	서울	서울 문래 기계금속 소공인특화지원센터((사)서울소공인협회)
	41	서울	서울 상생 소공인특화지원센터((사)국제경영원)

2. 복합지원센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 원스톱 지원으로 소공인 혁신기반 조성('19년 ~)
- (지원대상)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 (자격요건)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 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의 읍·면·동	50인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면·동	40인이상(업체 수)
군의 읍·면	20인이상(업체 수)

- (지원규모) '25년 23.2억원 → '26년 43.2억원

* '26년 신규 1곳, 2년간 국비 25억원 내외 지원(1차년도 10억원, 2차 년도 15억원)

□ 지원내용

- (내용) 스마트장비, 전시·판매장, 체험공간 등 구축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건물규모) 연면적 1,000m²(300평) 내외

<복합지원센터 주요기능(예시)>

- ① (공용장비) 기획부터 판매까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R&D, 측정, 검정, 물류 장비 등
- ② (전시·판매장) B2B, B2C 형식의 소공인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조성
- ③ (교류·창작공간) 회의실, 교육실, 디자인실, 연구개발실, 체험 공간 등 조성
- ④ (상생프로그램) 대·중견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등 산학연 상생프로그램 운영 등

□ 복합지원센터 현황('25년 기준 13개소 선정, 10곳 조성 완료)

연도	연번	시·도	집적지구	분야	국비 (백만원)	공동인프라 현황	완료 (예정)
'19 (2개)	1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섬유제품	2,500	공동장비실, 공동작업장, 분석실 등	완료
	2	서울	중랑구 면목·상봉동	섬유/의류/ 가죽·가방·신발	2,500	공용장비실, 재단실, 디자이너실 등	'26년
'20 (2개)	3	경북	영주시 풍기읍	식료품	2,500	공용제조가공실, 공동작업실, 공용저온창고, 등	완료
	4	경기	화성시 봉담읍	금속가공	2,500	공동작업장, 측정실, 장비운용실 등	완료
'21 (1개)	5	경남	하동군 화개면	식료품	2,500	전시판매장, 발효실, 스마트장비 등	완료
'22 (3개)	6	경기	화성시 동탄5동	전자부품 기타기계·장비	2,500	공용장비실, 공용전시실, 클린룸, 교육장 등	완료
	7	서울	광진구 중곡동	섬유제품 의류봉제	911	공동작업실, 교육실, 개발실, 전시실, 스튜디오 등	완료
	8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섬유제품	1,000	재단실, CAD실, 샘플실, 공동작업장	완료
'23 (3개)	9	서울	종로구	의류	710	재단실, 공동작업실, CAD실, 개발실 등	완료
	10	전북	부안군 진서면	식료품	1,910	공용장비실, 개발실, 전시장, 스튜디오 등	완료
	11	강원	원주시 우산동	기타기계·장비	2,380	공용장비실, 교육실, 회의실 등	완료
'25 (2개)	12	경북	경산시 진량읍	금속가공, 기타기계·장비	2,500	공정개발실, 정밀검증실, 복합제조실, 전시 등	'26년
	13	전남	무안군 청계면	비금속 광물	2,500	공동전시판매장, 공용R&D장비실, 제품개발실 등	'26년

□ **설립목적** :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함으로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 균형발전 도모

* (설립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설립일) '14. 4. 30.

□ **단체장** : 송치영 회장 (임기 : '24.8.30.~'27.8.29.)

□ **임원 및 회원**

○ (임원) 회장 등 45명(회장1, 수석부회장1, 상근부회장1, 부회장19, 이사21, 감사2)

○ (회원) 89개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정회원 72개, 특별회원 17개)

* 정회원 72개 (회원수 923,268명), 특별회원 17개 (회원수 38,734명)

○ (지회·지부) 239개(광역시·도 17개, 시·군·구 223개), 지역회원 42,330명

□ **조직 및 직원**

○ (조직) 3본부 5팀 1실 1센터

* 전략기획실, 경영지원, 총무회계, 사업운영, 정책홍보, 회원지역, 회원소통센터)

○ (직원) 29명(상근부회장 1, 본부장2, 팀장5 등)

○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산림비전센터 5층

□ **주요 업무** : 애로 해결 위한 정책 건의, 구매 관한 공동사업, 조사·연구, 교육 사업, 세무·회계·법률 서비스, 조직화 지원

※ 도시형소공인 관련 대표 협회·단체 현황

(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사)한국소공인협회
○ (대표자) 김영홍('60년생) ○ (설립일) 2024.3.19 ○ (근거법)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설립목적) 소공인의 균형있는 발전과 복리증진을 도모, 경제적 지위향상과 대한민국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 (주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1121번길 11 ○ (회원수) 43개 지부 3,300여개사(협회 추산)	○ (대표자) 박동희('60년생) ○ (설립일) 2020.3.12 ○ (근거법)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설립목적) 소공인의 자립과 복지를 위한 제반사업과 지원활동, 소공인의 기술경영시스템 구축과 기술개발사업 등 ○ (주소) 서울시 성동구 돌레3길 17 3층 ○ (회원수) 13개 지부 3만여개사(협회 추산)